

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법률 제8435호 (2007.5.17)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대법원규칙 제2119호 (2007.11.27)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이 제정·공포되어 「호적법」이 폐지되고
-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08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태료의 부과대상,부과징수,부과주체,부과기준,부과절차 및 이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따른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을 적용함으로서 「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를 폐지하여 법규를 정비코자함

2. 주요내용

- 1995. 1. 1 조례 제0048호 「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-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1조 ~ 제124조
-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50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